

의안번호	제758-1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360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12월 20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758-1
----------	-------

제출연월일 : 2017년 12월 20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강력한 가축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축방역 전담과 신설 및 소방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소방직공무원 직급 조정 등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소방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 2)
  - 소방장 : 15%이내 → 18%이내
  - 소방교 : 31%이내 → 30%이내
  - 소방사 : 29%이상 → 27%이상
-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 1,479명
  - 4급 : 1명 → 2명(+1), 5급이하 : 30명 → 29명(△1)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8% 이내	33% 이내	34% 이내	7.5% 이상	1.5% 이내

###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26% 이내	74% 이상

###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2% 이내	4% 이내	10% 이내	9% 이내	18% 이내	30% 이내	27% 이상

###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4% 이내	26%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3,481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79	-				
1~2급	1					1
2~3급	2	1	1			
3급	9	7		1		1
3~4급	2	2				
4급	69	44	7	5	7	6
5급이하 소계	1,378	-				
전문경력관 소계	18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				
연구직 계	159	-				
연구관	30	1		27	2	
연구사	129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소방직 계	1,761	-				
소방정	18	6		12		
소방령이하	1,743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